32회 공인중개사대비 기본이론 -핵심정리(2회차) 에듀윌



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

한병용 강사

● 중개사무소개설등록(등록)

등록의 개념 - 중개업을 하려면 등록을 해야 한다. 등록이란 등록한 사실을 '부동산중개사무소등록대장'에 기재함으로써 등록된 자가 개업공인중개사가 되었음을 국가가 공적으로 증명해 주는 것.

등록관청

중개사무소(법인은 주된 사무소)를 두려는 시장(구가 설치되지 않은 시 및 특별자치도의 행정시), 군수 또는 구청장

등록신청자

등록절차

공인중개사(소속공인중개사를 제외) 또는 법인이 아닌 자는 등록을 신청 할 수 없다.

1. 등록기준 구비 (1) 공인중개사의

- (1) 공인중개사의 등록기준 (전제조건 : 자격보유 + 결격사유에 해당×것)
 - ① 실무교육을 받았을 것
 - ② 중개사무소 건물(가설건축물은 제외)에 대한 사용권을 확보할 것
- (2) 법인의 등록기준 (전제조건 : 법인 및 대표자, 임원·사원이 결격사유에 해당×것)
 - ①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(사회적 협동조합은 제외)으로서 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일 것
 - ② 법 제14조에 규정된 업무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일 것 ※ 법 제14조에 규정된 업무: 중개업 + 6가지 겸업할 수 있는 업무
 - ③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며, 대표자를 **제외**한 임원 또는 사원의 1/3이상은 공인중 개사일 것
 - ④ 대표자, 임원 또는 사원(분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사무소의 책임자)가 실무교육을 받았을 것
 - ⑤ 중개사무소 건물(가설건축물은 제외)에 대한 사용권을 확보할 것
- 2. <mark>등록신청(등록신청서 + 등록기준구비서류 첨부 + 수수료납부 ▷ 등록관청에 제출)</mark> ※ 인장등록은 등록신청을 하는 때에 같이 할 수 있다.
- 3. 등록수리(등록처분) 및 등록통지 : 등록관청은 등록을 하고 7일 이내에 등록사실을 서면통지
- 4. 업무개시하기 전의 조치 ----- ① 인장등록 + ②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(업무보증설정)하여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함 ⇒ 등록관청이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교부함 + ③ 중개사무소 안에 서류 게시(중개사무소등록증 원본, 보수 및 실비표, 보증설정 증명서류, 자격증 원본)
- 5. 중개업무 개시 : 미리 휴업신고를 하지 않는 한 등록 후 3월 이내에 개시해야 함

이중등록×	<u>개업공인중개사는</u> 이중으로 등록을 하여 중개업을 할 수 <u>없다</u> .
	<u>개업공인중개사 등(</u> 개업공인중개사, 소속공인중개사, 중개보조원,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
이중소속×	임원·사원을 말함)은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, 중개보조원, 개업공인중개사인
	법인의 임원·사원이 될 수 <u>없다</u> .
등록의	①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사망 또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해산
효력소멸	② 등록관청의 등록취소처분 ③ 개업공인중개사의 폐업신고

② 중개사무소개설등록 등의 결격사유

- (1) 개념 : 등록도 할 수 없고 소속공인중개사, 중개보조원, 법인의 임원 또는 사원이 될 수 없는 사유
- (2) 결격사유의 종류(유형) 및 결격기간
 - ① 미성년자 성년이 될 때 까지
 - ② **피성년후견인·피한정후견인** 피성년후견심판·피한정후견심판에 대한 종료심판을 받을때까지 **※피특정후견인은 결격사유**×
 - ③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복권이 될 때까지
 - ④ <u>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(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</u> 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**3년**이 지나지 아니한 자
 - ⊙ 집행이 종료된 자 만기석방 후 3년간
 -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자 가석방된자로서 잔여형기를 마친 후 3년간
 - © 집행이 면제된 자(법률변경, 특별사면으로 집행면제된 자) 집행을 면제받은 후 3년간
 - ⑤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집행유예기간
 - ⑥ <u>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</u>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- 벌금형을 받은 후 3년간(다른 법 위반으로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결격사유×)
 - ⑦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자격취소 후 3년간
 - ⑧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정지된 자로서 자격정지기간중에 있는 자 자격정지기간
 - ⑨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 - 원칙 : 등록취소 후 부터 3년간
 - © 예외 : 사망·해산, 등록기준미달, **결**격사유 해당되어 등록취소처분을 받았거나/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로 인하여 폐업후 **재**등록 후에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경우
 - ⑩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폐업신고를 한 자로서 업무정지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업무정지기간
 - ①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업무정지의 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사원·임원이 었던 자로서 해당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업무정지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업무정지기간
 - ⑩ 사원·임원 중 위①∼⑪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: 그 법인은 등록을 신청×

③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범위

- (1) 본업 :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업이고 중개할 수 있는 중개대상물의 업무지역은 다음과 같다.
 - ①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(분사무소 포함) 및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: 전국
 - ② 부칙 제6조제2항에 규정된 개업공인중개사 : 중개사무소 소재지 시·도(특별시, 광역시, 도)

(2) 겸업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

- ①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: 중개업 외에 6가지 업무(법 제14조에 규정된 업무)만 겸업할 수 있다.
 - ⊙ 상가, 주택의 임대관리 등 **관**리대행 ⓒ 부동산의 이용, 개발, 거래에 관한 **상**담
 - © 개공을 대상으로 중개업의 경영**기**법 및 경영정보의 제공 ② 상가, 주택의 **분**양대행
 - © 이사업체등의 소개등 용역의 알선
 - (U) **경**매 및 공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과 매수신청(입찰신청)의 대리
- ②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: 원칙적으로 제한×
- ③ 부칙제6조제2항에 규정된 개업공인중개사 : 원칙적으로 경매,공매 관련 업무(闽)외에는 제한×

◆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(소속공인중개사·중개보조원)

- (1)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신고 및 고용관계종료신고
- ① 고용신고 : 소속공인중개사를 고용한 경우에는 실무교육을 받게 한 후,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경우에는 직무교육을 받게 한 후 업무개시하기 전에 등록관청에 신고(전자문서 포함)해야 함
- ② 고용관계종료신고 :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함
- (2) 고용인의 업무상 고의 또는 과실에 따른 책임의 부담자 및 그 책임의 내용
- ①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.
- ② 고용인의 중개업무상 고의·과실로 이 법 위반행위를 한 경우 고용인과 개업공인중개사는 함께 ① 민사책임(손해배상책임) ② 형사책임 © 행정상책임을 진다.